중도퇴사 신청시 안내

1. 중도퇴사를 원할 경우

○ 중도퇴사 신청서 작성

- 본인 퇴사 10일전에 홈페이지 로그인 후 **'마이페이지' '중도퇴사신청'**에서 먼저 신청 (환불신청서와 본인통장사본)을 증빙서류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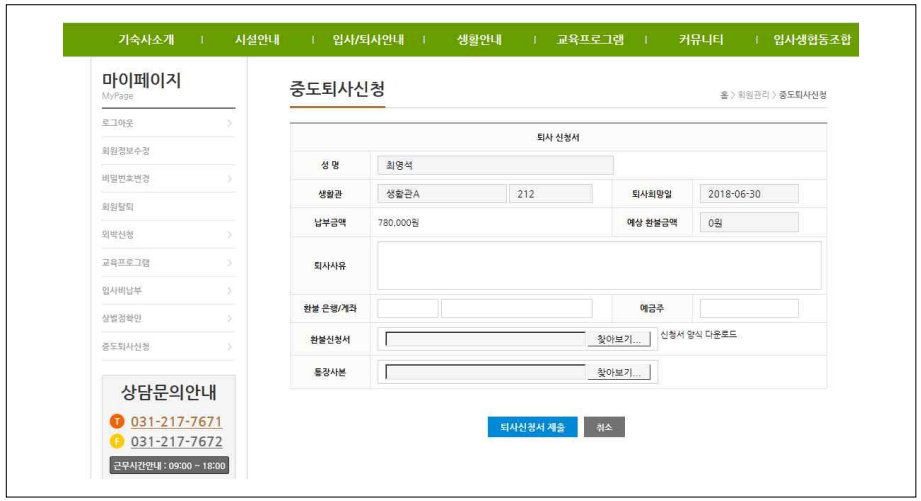

2. 본인 퇴사 당일

○ 입사실 점검 : 입사생 본인 짐정리 후 모더레이터와 퇴사전 입사실 점검표 작성

○ 입출입카드 반납 : 퇴사시 모더레이터에게 반납

○ 환불기간 : 환불금은 퇴사후 1개월내 환불

3. 유의사항

○ 환불금은 보증금과 입사비 (퇴사일 기준 남은 차액)으로 계좌이체 됨

○ 중도퇴사 신청후 따복기숙사 (카카오플러스 친구 https://center-pf.kakao.com)로 문의 남김

○ 입사실 점검후 기타경비(입출입카드 분실, 침대커버 및 물품손괴로 인한 금액)가 있을 경우 입사비에서 차감후 환불

경기도 따복기숙사 관장 귀하

퇴사시(정기□, 중도□, 강제□) 환불신청서

인적사항	이 름		호 실	
	성 별		생년월일	. . .
	휴대폰		자택번호	
환불사유	정기( ), 중도( ), 강제( )		입 사 비 납부내역	□전월:( )원 □당월:( )원
	퇴사이유 :		퇴사일자	. . .
환불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	
	※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**학생 본인 명의**의 예금계좌			

상기 본인은 경기도 기숙사를 퇴사하고
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고자 퇴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따복기숙사 **경기도 따복기숙사 관장** 귀하

※ 경기도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도로부터 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음

붙임서류	1. 입금통장 사본(본인명의) 1부.

환불금액 합계	보증금	입사비 (기숙사 비)	기타(물품손괴 등)
원	원	원	

※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※

① **환불사유란**은 퇴사이유 기재, 입사비 납부 확인, 퇴사일자(입사실 개인물품 반출일) 기재요망
② **환불금액**은 따복기숙사 행정지원팀에서 처리 (퇴사일로 기준)
③ **환불금** 입금은 퇴사일(서류완비)로부터 약 1달정도 소요, 계좌이체 환불
④ **보증금**은 전액 환불하되 각종 미납금,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환불

<환불기준>은 기숙사 운영규정 환불규정에 의거

◆ 보증금 환불

- 보증금은 퇴실시 전액 환불
- 퇴실시 입사생실 점검결과 및 기숙사비 미납(일할 계산)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

◆ 입사비(기숙사비) 환불

- 퇴실유형에 따라 무단퇴실, 강제퇴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후 입주기간 전체일수를 반영한 잔여액을 환불하며, 그 외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
- 학기별로 정하는 정기 입주일을 원칙으로 하며, 이후에 선발된 입사생은 개별 입사실 퇴사일자 기준 적용